

#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II)\*

## 1. 프랑스

### 개요

프랑스는 1998년 7월, 「식품의 위생 안전성의 감시 및 검사의 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험관리와 위험평가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BSE 문제 등 식품안전 당국의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1997년 후반부터 식품안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8년 7월, 「식품의 위생안전성의 감시 및 검사의 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1999년 4월 독립된 위험평가기관으로서 식품위생안전청(AFSSA)이 설치되었고, 식품위생안전청이 실시한 위험평가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와 구체적인 조치를 관련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프랑스 농수산식품부는 식품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안전관리(Management)를 주도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 식품산업의 진흥 및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식품 전반에 걸친 안전정책의 입안, 집행 및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농수산식품부 이외의 식품행정과 관련된 정부부처로는 고용사회연대부와 경제재정산업부가 있으며, 고용사회연대부는 사람의 건강, 공중위생의 확보, 경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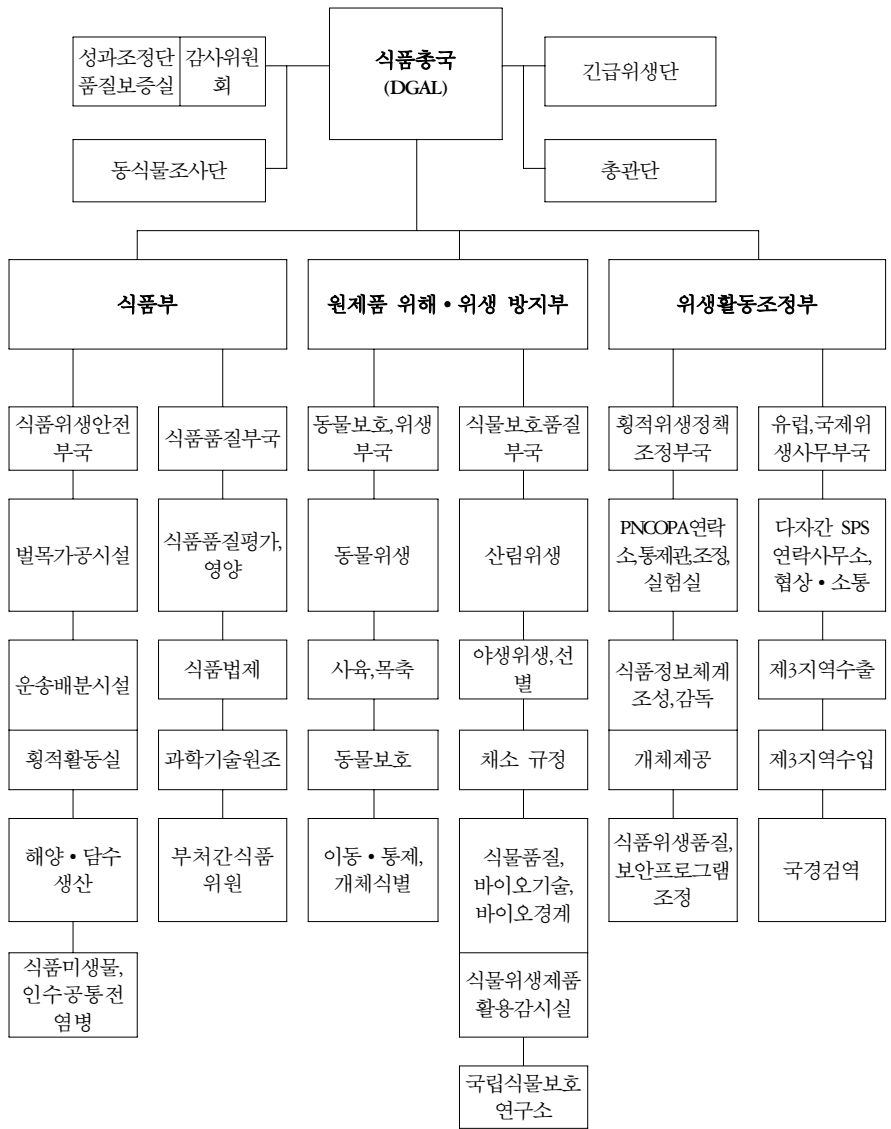
\* 본 내용은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jihchoi@krei.re.kr, 02-3299-4316)

정산업부는 소비자 행정, 경쟁정책, 부정거래의 방지를 맡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는 농수산식품부 산하 식품총국(DGAL)에서 담당하는데 식품총국은 식품부, 원제품 위해·위생방지부 및 위생활동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부는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위생활동조정부는 동물, 수산물 및 식물검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동식물방역업무는 원제품 위해·위생방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총국에는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 식품산업의 진흥 및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식품 전반에 걸친 안전정책의 입안, 집행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 프랑스 식품총국의 조직체계



## 조직연망

식품안전위생청(AFSSA)은 1999년 국립동물 및 식품연구소(CNEV) 내의 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2009년 11월 현재 본청은 3국에서 위험평가임무를 수행하고 10개 지역의 11개 연구소는 연구 및 과학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청 조직은 국립수의약품청, 위생, 영양 위험평가국, 환경식품국과 연구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지역에 따라 수산물, 육류 등 종류별로 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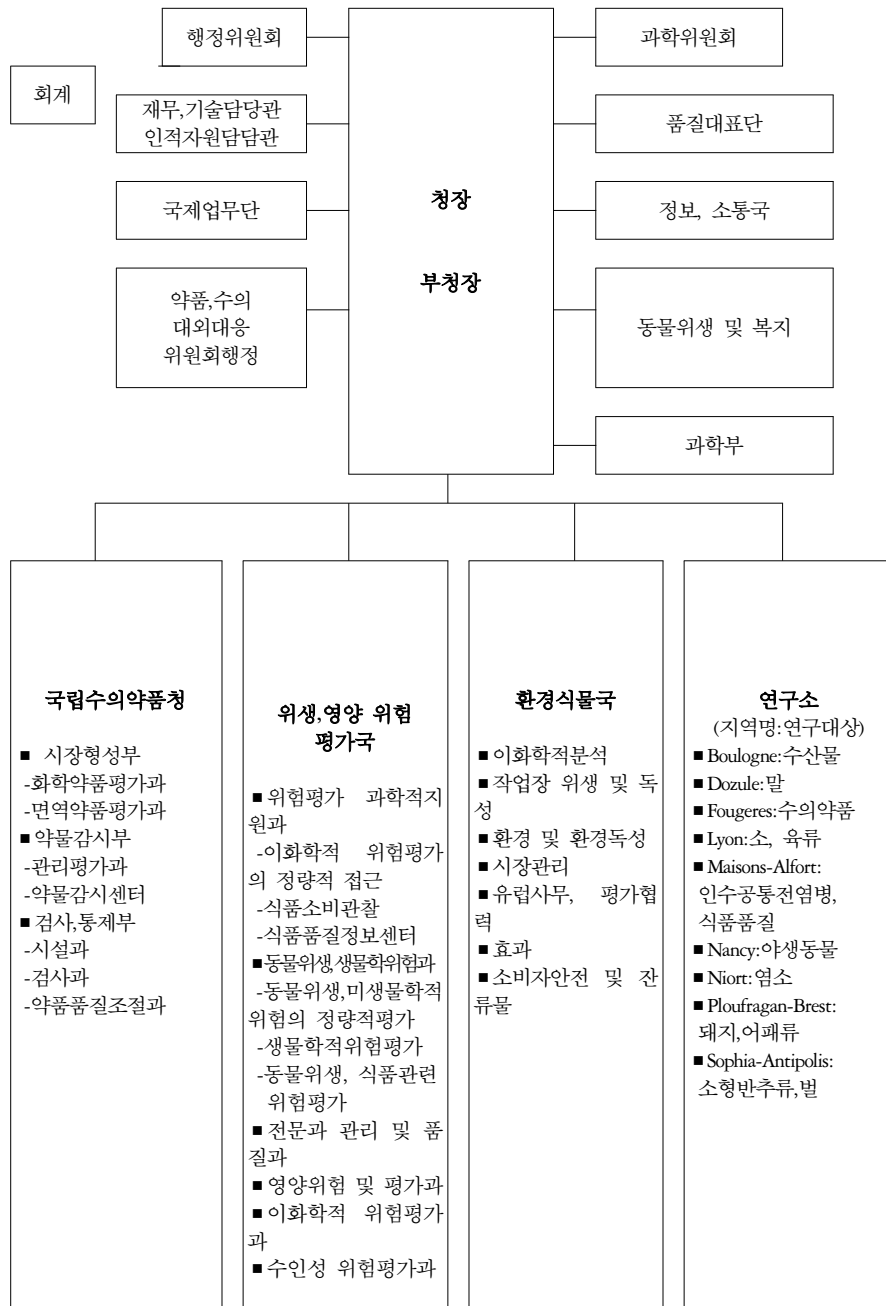
식품안전위생청은 직원 1,190명, 이 중 750명은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전문인력이 1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예산은 상/하의원에서 결정되며 약 1억 유로정도이다. 설립 이후 6,600여건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80여건의 과학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매년 250여건의 국제학술발표를 실시하며, 3년에 걸쳐 184회의 연구소간 효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사회는 정부부처, 업계(소비자 및 생산자) 등으로 구성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식품안전위생청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식품안전위생청의 주요 역할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상의 위험평가와 동물건강/동물성 질병과 관련된 과학적 지원과 연구이다. 식품안전위생청의 약 30% 이상 조직이 동물관련 분야에 연계되어 있으며, 12개 연구소 중 8개 연구소, 10개의 과학전문 패널 중 4개의 패널이 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AFSSA는 독립적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견해(권고)를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서 내용은 웹사이트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평가 및 권고 내용을 존중한다. 평가보고서, 연례활동보고서, 권고사항, 논문, 학술지, 언론발표 자료 등은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식품위생안전청은 자체 및 관리부처 요청에 의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권고함으로써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부처간 긴밀한 업무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생청의 주요 역할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상의 위험평가와 동물건강/동물성 질병과 관련된 과학적 지원과 연구이다. AFSSA는 독립적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견해(권고)를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2 식품위생안전청의 조직체계



## 2. 덴마크

### 개황

1995년 덴마크 전국과학위원회는 식품안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련 법령·조직·관리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995년 덴마크 전국과학위원회는 식품안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식품안전 관련 법령·조직·관리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996년에는 소비자, 농가 및 업계의 대표들이 총리에게 식품안전 관련 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덴마크의 식품안전 관련 조직개편은 개편 이전 보건부(식품안전기준 제정 및 유통분야 위생), 농업식품부(축산식품), 수산해양부(수산식품)를 통합하여 1997년 식품농수산부를 설립하고 수의식품청(DVFA)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식품농수산부는 과거 품목별로 나뉘어 있던 다양한 지역별 사무소를 지역검사사무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의식품청에서 직접 관할하되 식물국과 수산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직연망

수의식품청은 식품검사, 식품안전기준설정, 표시기준, 가축방역, 동물약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식품위험관리 분야를 총괄하며, 식물국은 식물위생과 품질관리로 종자·곡물·사료 검사를 담당하고, 수산국은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물위생관리를 담당한다.

수의식품청은 식품검사, 식품안전기준설정, 표시기준, 가축방역, 동물약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식품위험관리 분야를 총괄하며, 식물국은 식물위생과 품질관리로 종자·곡물·사료 검사를 담당하고, 수산국은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물위생관리를 담당한다. 수의식품청은 2004년에 가족·소비자부로 이관하였으나 2007년에 식품농수산부로 재이관되었다. 본청에는 약 700명의 인력이 있으며, 10개 지역청에 약 2,300명의 풀타임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의 식품위험평가기능은 국립 수의식품연구소가 덴마크 기술대학(DTU)에 합병됨에 따라 2007년부터 덴마크 기술대학 내 국립식품연구소(National Food Institute)와 국립수의연구소(National Veterinary Institute)에서 식품위험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식품연구소는 5개 부서(영양, 식품화학, 식품가공, 미생물 위험평가, 독성 위험평가) 약 370명(2009. 03. 기준)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40명), 식품화학, 식품가공(20명) 부서는 주로 기초연구를 실시하며, 미생물 위험평가부는 진단법 개발, 식중독 관련 병원성 미생물, 인수공통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평가 업무, 독성 위험평가부는 식품 섭취량, 노출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농약, 동물용 의약품, 독소 등에 대한 노출평가, 독성시험법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식품연구소는 수의식품청과 협력하여 식재료 생산과 가공에서 가정에서의 조리 방법,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등 식품관련 모든 과정에 관련된 영양, 식품안전, 식품공학,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국립수의연구소는 관리조직 및 3개의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기준 약 300여명의 인력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참여인력 중 관리인원은 19명이며 이를 제외한 잔여인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수의연구소는 국립식품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연구 및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계당국과 업계에 평가 내용 자문을 실시한다.

그림 3 덴마크 수의식품청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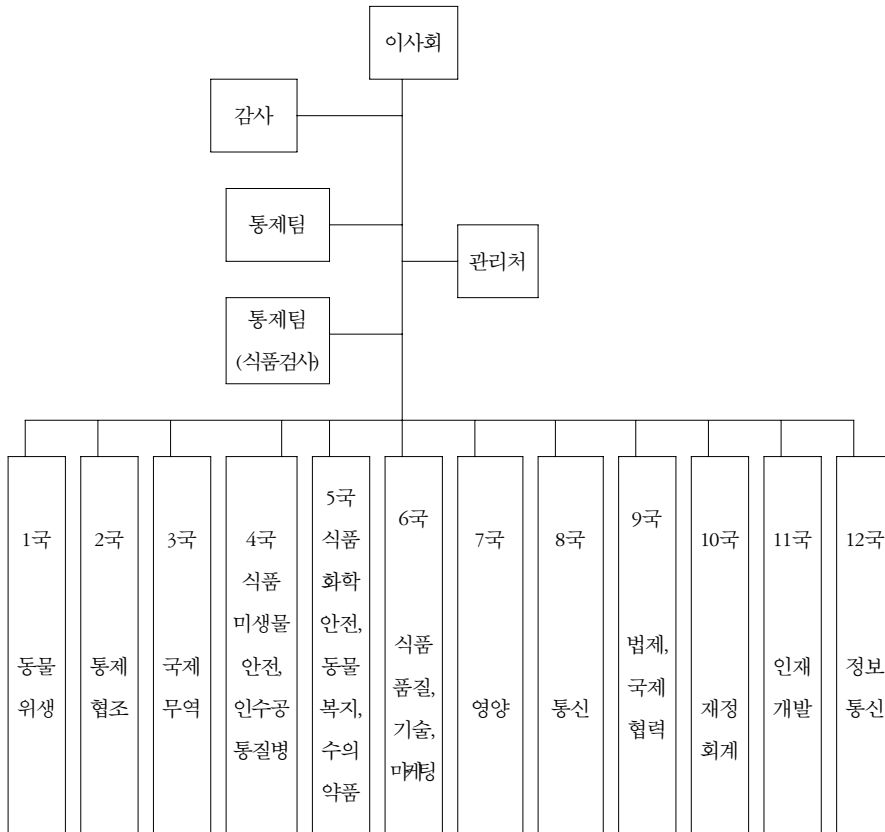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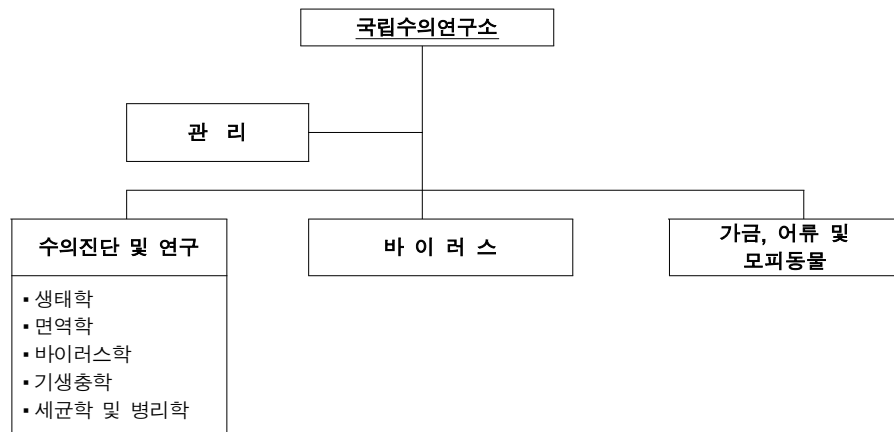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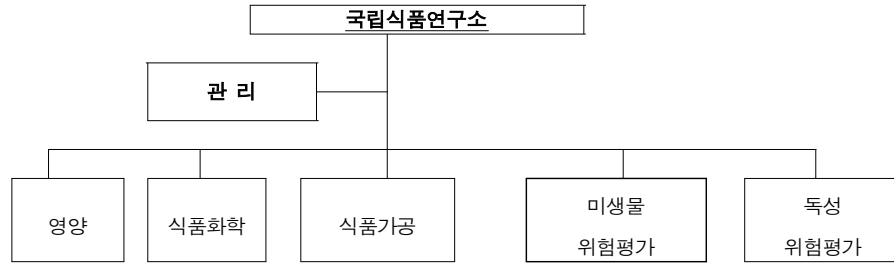


그림 4 덴마크 기술대학 식품연구소 및 수의연구소 조직체계



과거 독일은 전통적으로 연방보건부가 식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연방식품농림부는 동물전염병예방, 사료·농약 관리 등 주로 가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해 왔다.

### 3. 독일

####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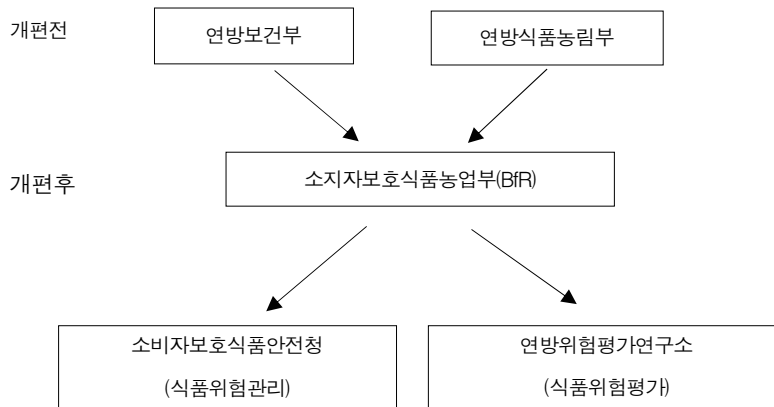
1996년 유럽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던 영국의 광우병(BSE) 사태에도 독일은 한 동안 광우병(BSE) 발생통제를 자신해 왔으나 결국 국내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련 조직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우병 발생 이후 독일 총리 슈레더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다. 과거 독일은 전통적으로 연방보건부가 식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연방식품농림부는 동물전염병예방, 사료·농약 관리 등 주로 가

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해 왔다.

2001년 1월 단행된 조직개편 방안은 연방보건부에서 담당하던 식품안전, 도축장 위생관리, 수입식품 검역, 소비자보호 등 거의 모든 식품안전업무를 연방식품농림부로 이관하고, 연방식품농림부를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에서 식품안전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는 2002년도에 위생관리업무(risk management)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과 안전성평가(risk assesment)를 담당하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를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이들 기관은 1개 부처로의 통합 속에서도 기능별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는 2002년도에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과 안전성평가(risk assesment)를 담당하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를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그림 5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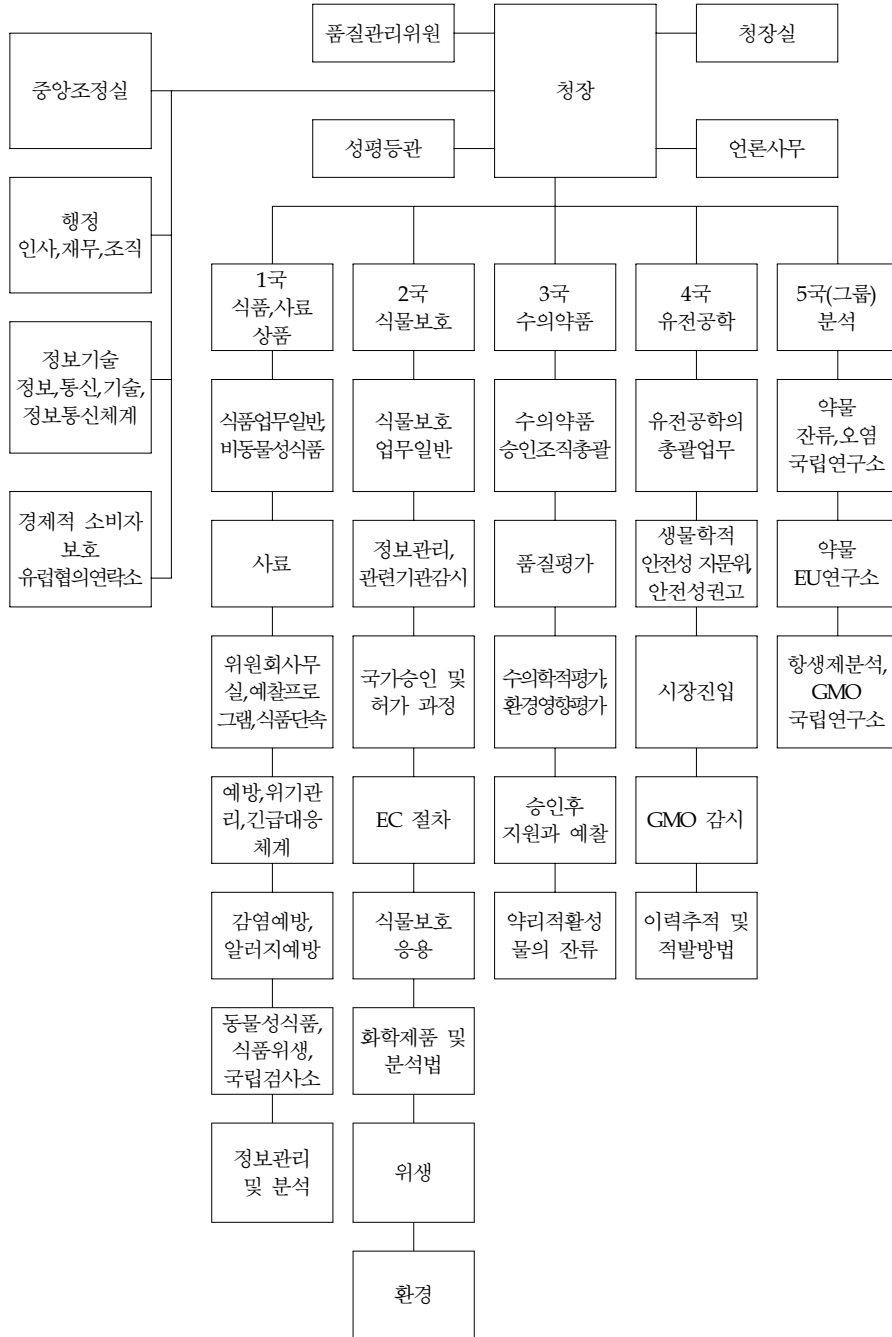


### 조직연망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5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보호(농약 등), 동물약품, GMO, 표시 및 검사 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담당인원은 약 400여명에 달한다.



그림 6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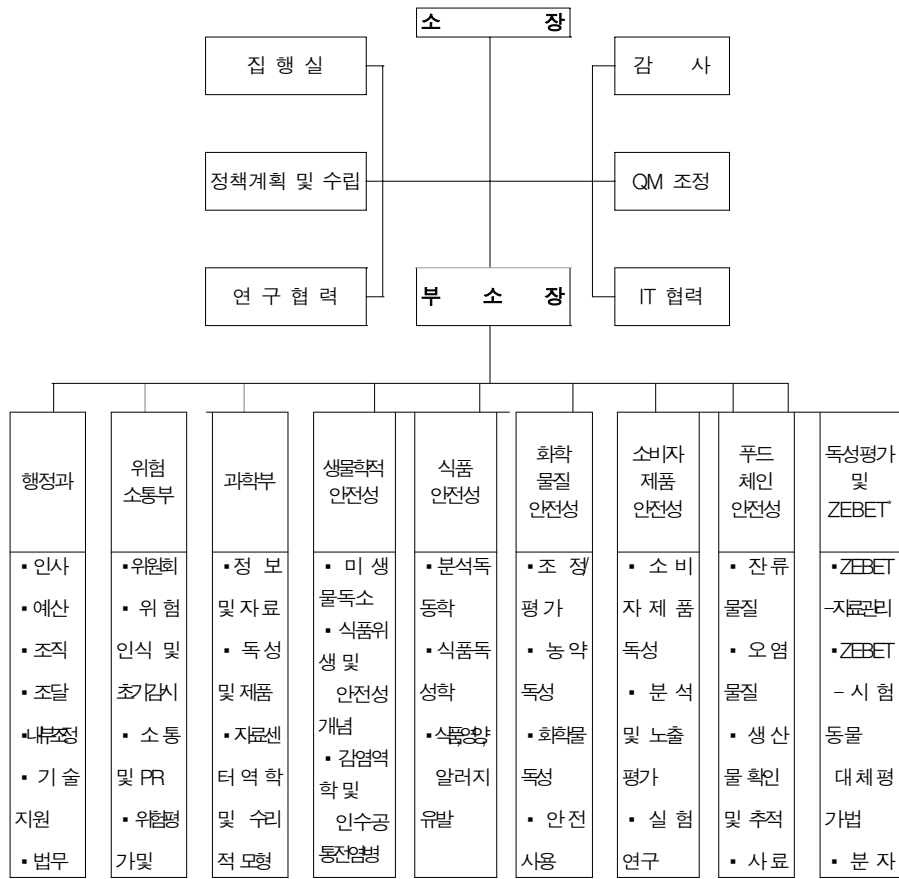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위험평가연구소는 최근 푸드체인안전성부서와 독성실험 및 ZEBET(동물실험대체시험법 평가 및 검증센터)가 신설되어 2009년 11월 현재 6개의 업무조정부서, 9개의 위험평가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7월 현재 총원은 699명이며, 이중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256명이다. 연방위험평가연구소의 2008년 예산은 52.2백만 유로로 추정된다. 주요업무는 「소비자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성 재개혁에 관한 법령」(2002. 08.)을 근거로 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로 2008년 2,600건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8개 이상의 EU관련 과제 및 2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위험평가연구소 소속의 256명의 연구원 중 111명은 312개의 국내 및 국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해요소를 세분화하여 연구소 내 1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연방위험평가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중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위험평가업무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독일의 연방소비자 보호식품안전연방 위험평가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소비자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성 재개혁에 관한 법령」(2002. 08.)을 근거로 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로는 2008년 2,600건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8개 이상의 EU 관련 과제 및 2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7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위험평가연구소 조직체계



	영양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출평가 및 기준</li> <li>• 장외술</li> <li>• GL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발생조사</li> <li>• 분자진단 및 유전학</li> <li>• 항생제내성 및 내성인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잔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 위생 및 미생물</li> <li>•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및 시료 첨가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성학</li> <li>• 나노 독성학</li> <li>• 표준물질 검증</li> </ul>
--	------	---	--	--	---	---	--	--

## 4. 네덜란드

### 개황

네덜란드는 2001년 보건복지운동부 및 농림식품부 산하의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운동부 산하에 식품청을 설립하였다. 2002년 식품안전사고의 증가와 의회 및 시민들의 요구로 식품청의 기능을 식품 이외의 소비자 이슈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식품소비재안전청(VWA)으로 개편하였다. 2003년에는 VWA를 보건복지운동부 산하에서 농업자연식품품질부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006년 1월에는 보건복지운동부 산하에 있는 보건감시국(KvW)과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소속인 가축육류감시국(RVV)의 감시업무를 식품소비재안전청으로 흡수 통합시킴으로써 VWA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 조직연망

식품소비재안전청은 원재료부터 소비재까지, 식품부터 비식품까지 위협평가, 위험소통, 위험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WA 인력은 2007년 기준 1,691명이며, 예산은 2007년 기준 1.65억 유로이다. 의회는 2006년 「독립적 위협평가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식품소비재청 내에 위험관리기능과 위협평가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협평가국은 다양한 분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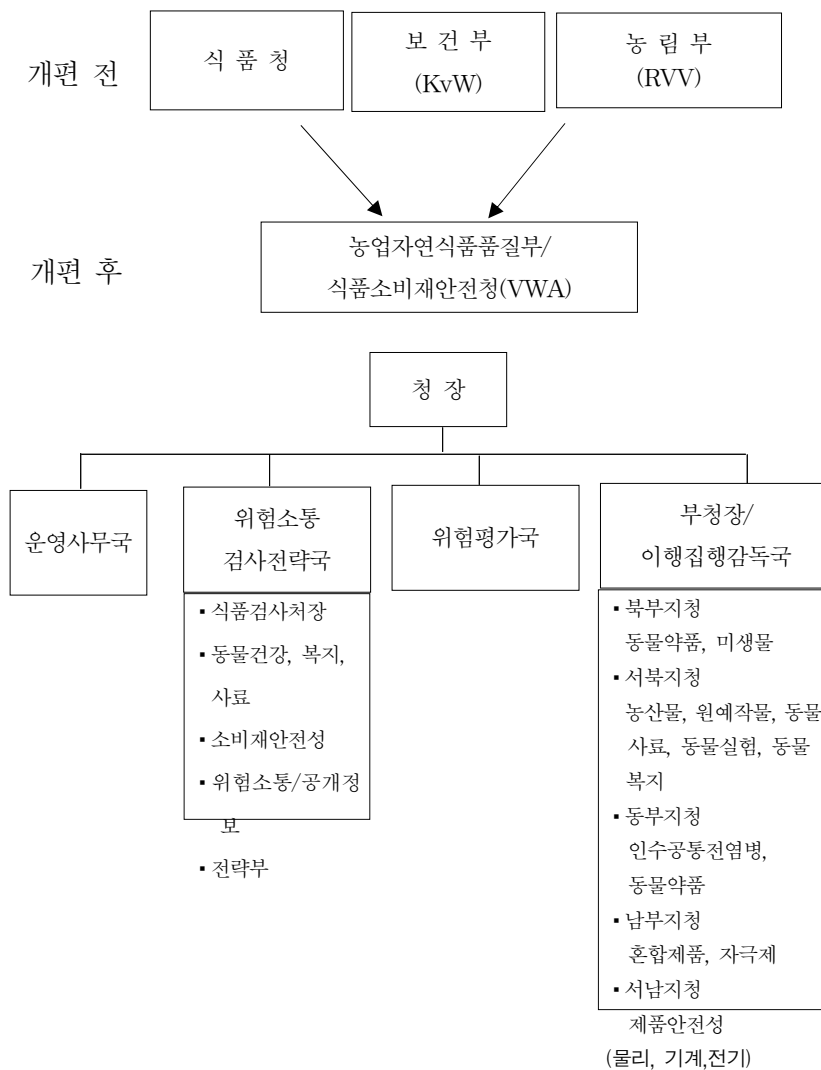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2006년 1월에 보건복지운동부 산하에 있는 보건감시국(KvW)과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소속인 가축육류감시국(RVV)의 감시업무를 식품소비재안전청으로 흡수 통합시킴으로써 VWA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문인력과 13명의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처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WA는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원(RIVM), 식품안전연구소(RIKILT), 동물질병관리중앙연구소(CIDC) 등 관련연구소, 대학 등과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VWA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다년도 혁신계획 등을 수립하여 각 위해요소의 세분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식품위험평가 및 연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VWA는 농업자연식품품질부산하 조직으로서 부처소속형이며 식품위험관리와 평가기능이 일원화되어 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령을 근거로 평가기능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VWA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다년도 혁신계획 등을 수립하여 각 위해요소의 세분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식품위험평가 및 연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8 네덜란드의 식품안전체계



## 5. 오주

### 개황

호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검역, 방역, 조사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단계 구조로 업무가 수행된다.

호주는 호주와 뉴질랜드내 통일된 식품규정을 수립 및 유지를 위해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법 1991』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1991년 8월 독립행정기관인 호주·뉴질랜드식품청(ANZFA)을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호주식품규제제도 개혁을 위해 호·뉴식품규제각료회의(ANZFRMC)가 구성되어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법령(2000. 11.)이 승인됨에 따라 2002년 7월 ANZFA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호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검역, 방역, 조사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단계 구조로 업무가 수행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기능분담도 매우 명확한데 주정부는 생산과 관련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및 사료에 관한 제조, 판매, 사용에 관한 규제 및 감시와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및 식육검사와 관련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Australian standards)을 모든 주(州)에서 법제화하며, 식육시장의 개설허가권을 갖는다. 또한 유통·소비와 관련 식품 등(국내산)에 관한 안전기준의 설정, 법률의 집행·감시, 국내산 식품의 표시(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정책을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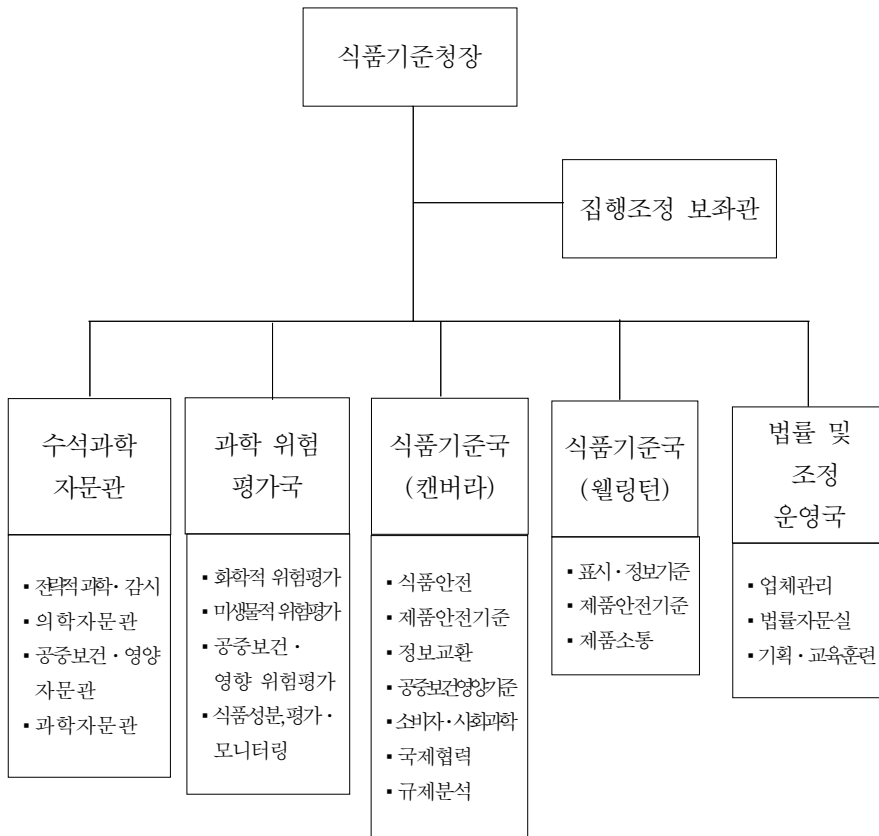
### 조직연망

FSANZ는 보건부에 속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식품제조, 규격표시, 규격제정, 등 위험관리 기능, 소비자 정보제공 등 위험소통, 식품섭취 모델링 연구 등 위험평가 등 식품안전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FSANZ는 보건부에 속해 있으며, 주요업무는 식품제조, 규격표시, 규격제정 등 위험관리 기능, 소비자 정보제공 등 위험소통, 식품섭취 모델링 연구 등 위험평가 등 식품안전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기준청의 인원은 135명, 예산은 2.8억 호주 달러(2009. 06. 기준)로 국립식품청(1991년)에 비해 인원과 예산이 6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FSANZ는 5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관리업무는 ANZFRMC 및 농림수산부(DAFF)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위험평가는 과학위험평가국에서 수행한다. FSANZ는 식품기준청 CEO, 뉴질랜드 장관 3인, 국립보건의료연구회 1인, 소비자연명 1인, 과학 및 공공단체 3인, 식품산업 관련 2인 등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9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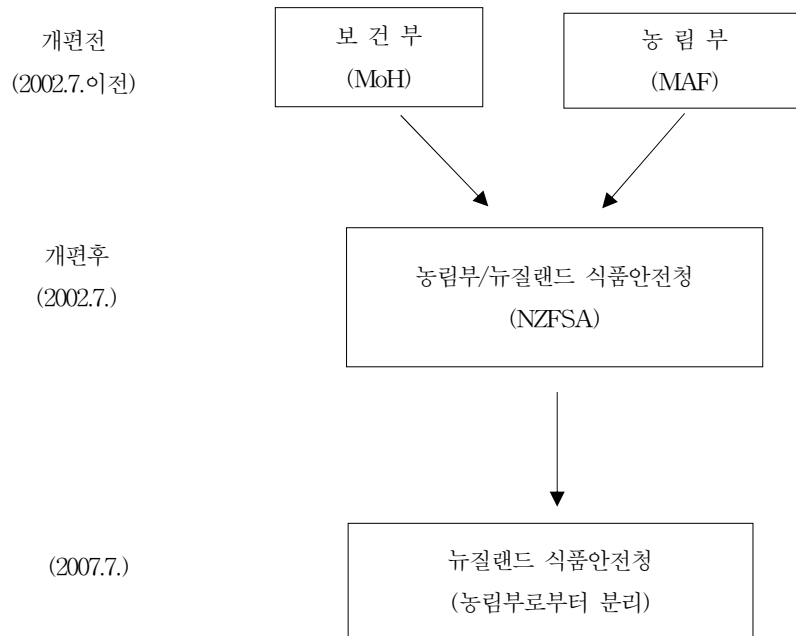
## 6. 뉴질랜드

### 개방

뉴질랜드의 식품안전관리업무는 2002년 7월 이전까지 1차 생산, 가공 및 수출을 중점적으로 담당한 농림부와 식품의 국내유통, 수입을 담당하는 보건부로 이원화 되어 수행되었다. 2002년 7월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이 설립되면서 식품안전 관리가 일원화되었는데 설립당시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7월 NZFSA는 독립적인 부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NZFSA는 2007년 7월 농림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식품안전관리업무는 2007년 7월 NZFSA는 독립적인 부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NZFSA는 2007년 7월 농림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0 뉴질랜드 식품안전체계 개편



### 조직연망

뉴질랜드의 식품위험평가는 NZFSA 내 과학그룹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위험평가 연구조사 사업은 여러 연구기관(ESR, NIWA)에서 수행하고 있다.

NZFSA의 조직은 청장 산하에 10개의 전문 그룹과 자문위원회(식품안전자문위원회, 식품안전성 공무원 위원회, 소비자포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인력은 약 420명(2007년 기준)이며, 2002년 출범 당시에 비해 약 60%가 증원되었다. 예산은 2006년 기준 약 8.15억 달러(NZ\$)이며, 규제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비용회수 및 독자적 정부예산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NZFSA는 총 예산의 약 44.2% 정도를 규제기준설정에 사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식품위험평가는 NZFSA 내 과학그룹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위험평가 연구조사 사업은 여러 연구기관(ESR, NIWA)에서 수행하고 있다. 과학그룹(13명)은 총괄책임자, 공중보건, 자연독소/바이러스, 미생물학, 독성학, 화학물질 등 각 전문분야 담당자로 구성된다. 실질적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ESR은 1992년 설립되어 오클랜드 등 3개 지역에 연구소가 있으며 직원은 350여 명이다.

뉴질랜드 식품위험평가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평가 모델링 그룹’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예산, 인력 및 조직의 상호활용을 통해 합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조직간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식품위험평가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평가 모델링 그룹’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림 11 뉴질랜드식품안전청(NZFSA)의 조직체제



## 7. 캐나다

### 개황

캐나다는 1997년 4월 기존의 보건부, 농식품부, 수산해양부, 산업부 등 4개 부서에 분리·운영되었던 연방정부의 식품안전 관련업무를 기능에 따라 부처별로 일원화하였다. 식품위험(안전)관리업무는 식품검사청법에 근거한 농식품부 산하에 식품검사청(CFIA)을 신설하여 식품검사, 감시감독 및 검역기능을 담당하여 식품위험관리를 일원화하였다. 보건부에서는 『식품의약품법령』에 근거하여 식품검사청이 실시한 식품검사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위험평가, 식품관련 법령의 제정, 식품안전/영양에 관한 연구, 사전조사 및 평가업무를 실시하며 농약 및 동

캐나다는 1997년 4월 기존의 보건부, 농식품부, 수산해양부, 산업부 등 4개 부서에 분리·운영되었던 연방정부의 식품안전 관련업무를 기능에 따라 부처별로 일원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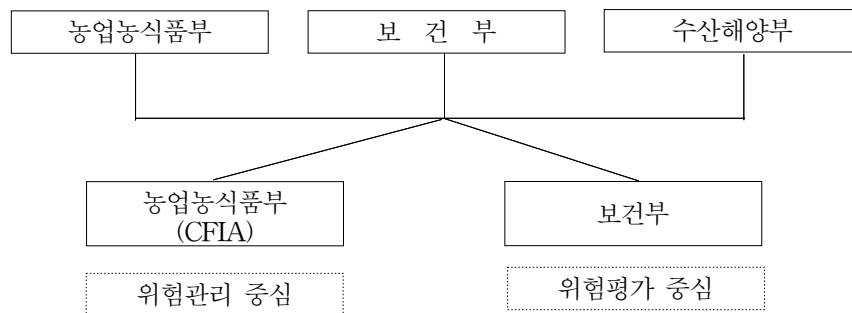


물약품의 등록권한을 가짐으로써 식품위험관리와 위험평가체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였다.

캐나다는 식품검사청(CFIA)의 설립으로 검사, 검역/방역, 위생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사업무조직의 간편화를 통해 업무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평가업무는 식품안전정책을 사전예방, 고위험요인 관리 및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식품검사청(CFIA)의 설립으로 검사, 검역/방역, 위생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사업무조직의 간편화를 통해 업무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2 캐나다의 식품안전기구 개편



## 조직연망

CFIA는 안전하고 고품질 식품의 근간이 되는 식품공급, 식물 및 동물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한다. CFIA는 전국을 4개 지역(대서양, 퀘벡, 온타리오, 서부)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18개 지역사무소, 185개 현장사무소(국경검사소 포함)와 가공장과 같은 408개 비공공 시설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1개의 시험소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1월 기준 약 6,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캐나다 보건부는 최근 식품위험평가 관련 조직의 일부를 통폐합하였는데, 구강보건담당부와 보건정책부를 폐지하고 약품·식품부를 건강제품·식품부로 개편하였다. 건강제품·식품부는 14국으로 구성되며 이중 식품국에서 식품위험평가업무를 실시한다. 식품국은 식품안전평가과, 화학물질안전과, 미생물학적 위해과, 영양과학과 등 식품위험평가와 식품안전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제품·식품부는 다년도 정책 계획(2007-2012년)을 수립하여 10대 전략에 기초한 캐나다 의약품과 식품안전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부는 약 10,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부의 36%가 전문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제품·식품부의 전문연구인력은 보건부 전체 인력의 약 22%를 차지한다.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캐나다 보건부는 최근 식품위험평가 관련 조직의 일부를 통폐합하였는데, 구강보건담당부와 보건정책부를 폐지하고 약품·식품부를 건강제품·식품부로 개편하였다.

그림 13 캐나다 CFIA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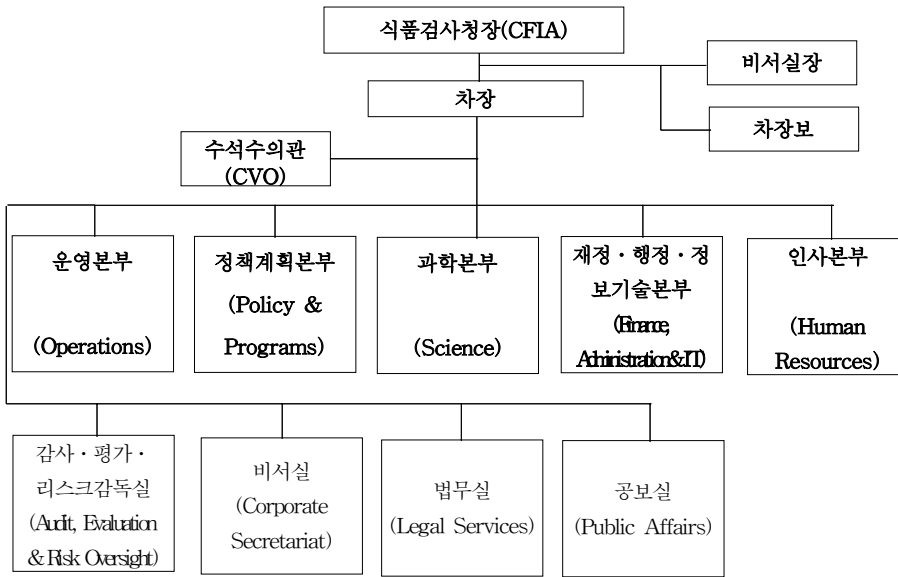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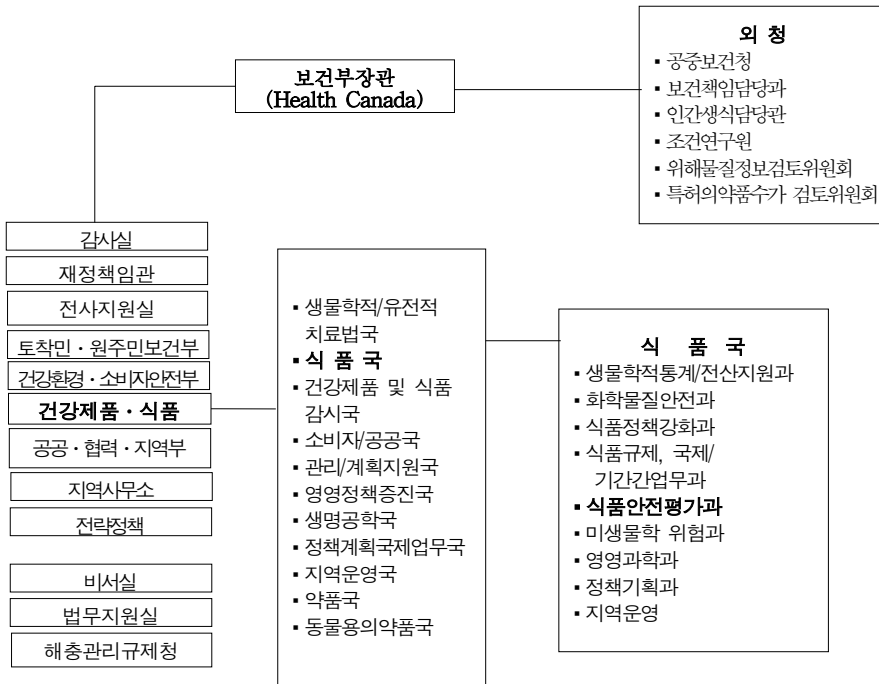


그림 14 캐나다 식품위험담당 보건부의 조직체계



참고자료

배중하, 최지현, 우병준, 한재환,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8

<http://www.usda.gov/>

<http://www.fda.gov/>

<http://www.aphis.usda.gov/>

<http://www.fsis.usda.gov/>

<http://www.epa.gov/>

<http://www.nmfs.noaa.gov/>

<http://www.maff.go.jp/>

<http://www.mhlw.go.jp/>

<http://www.fsc.go.jp/>